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시장 이 상 배
편집인 : 공 보 관 이 상 진
전 화 : 731-6111~3
인 쇄 : 한국철류허산업(인쇄)주식회사
전 화 : 273-6111~3

시보

차 례

제 2960 호	서울특별시합천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	2
제 2961 호	서울특별시농수산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	2
제 2962 호	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	2
제 2963 호	서울특별시농수산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	4
제 2964 호	서울특별시포구사입특별조치법설치조례	4

제 2503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개정규칙 6

[illegible]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인은 공무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"4천만명 한뜻으로 다시 한번 땀흘리자"

222

조 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
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1992. 10. 23

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㉠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960호

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
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 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 중 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5급
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주사”
를 “구로부녀복지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,
마포·노원부녀복지관장 및 남부·동부근로
청소년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
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, 근로자회관장
은 지방행정주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농
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
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0. 23

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㉠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961호
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
설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
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제 2 항 중 “국무총리”를 “내무부장
관”으로 한다.

제 5 조제 2 항 중 “국무총리”를 “내무부장
관”으로 한다.

제 8 조제 1 항 중 “국무총리”를 “내무부장
관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 1 항 중 “국무총리”를 “내무부장
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농
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0. 23

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㉠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962호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
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
하여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
치하고, 그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는 이 조
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
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육성기금(이하
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 3 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
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 출연금
2. 농업협동조합, 축산업협동조합 등 농
촌지원 관련단체의 출연금
3. 기금의 운용 수익금

제 4 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
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농촌지도자의 연수 지원

2. 농촌지도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융자

3.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영농자금 융자

4. 기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도자육성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·지원

제 5 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.

② 기금은 체신관서, 은행법 제 3 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(이하 “금융기관”이라 한다)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에 위탁한다.

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,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제 6 조(기금의 회계기관)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.

제 7 조(기금관리위원회) ① 기금운용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

1. 농축과 농수산제장
2. 농촌지도소 기술담당관

3. 농촌지인 관련단체의 임·직원 및 농업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

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영계획
2. 기금의 조성, 적립, 운용 및 결산
3.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심사·선발
4. 기타 농촌지도자의 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5월과 다음 회계연도 3월에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8 조(기금지원 대상자의 선발) ① 기금에서 지원하는 농촌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지도자 서울특별협의회에 소속된 농촌지도자이어야 한다.

1.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후계자
2.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민

② 농촌지도자가 기금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촌지도소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농촌지도소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추천을 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세부적인 선발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9 조(금융기관의 취급업무에 관한 감독) 시장은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

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조사 등) ① 시장은 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기금이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자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2조(권한위임) 이 조례의 시장권한은 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제 7 조제 3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으로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연도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수립·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0. 23

서울특별시시장 이상배 ⑤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963호
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5 조제 1 호 중, “600가마 / 80kg”을 “500가마 / 80kg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0. 23

서울특별시시장 이상배 ⑤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964호

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

제 1 조(목적) 도시교통정비촉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의5 및 주차장법 제 21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, 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·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제정의 구분) 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,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
제 3 조(관리·운용) 회계는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·운영한다.

제 4 조(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) 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.

1. 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
2.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한 파징금
3.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규정에 의한

시장이 부과한 과태료

4.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

5. 법 제1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대상인 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납부한 비용

6.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

7. 정부의 보조금

8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9. 기타 수입금

② 교통관리제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교통국(주차관리제정 세출은 제외) 및 산하사업소(교통관리사업소, 자동차관리사업소)의 인건비, 경상적 경비

2.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 조례 제5조 규정의 대행비용

3.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보조사업

제5조(주차관리제정의 세입 및 세출) ① 주차관리제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.

1.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,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

2.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

3. 정부의 보조금

4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5. 기타 잡수입

② 주차관리제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주차관리부문 인건비, 경상적 경비

2.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

3.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보조

4.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

제6조(일시차입) 회계는 운영자금에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.

제7조(잉여금의 처리)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.

제8조(예비비)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93. 1. 1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례) 제4조의 세입 중 제1항제1호는 '93. 8. 1 기준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'93. 1. 1부터 부과되는 분에 적용한다.

③ (관련조례 개정)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제5장 제명을 "보칙"으로 한다.

2.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삭제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0. 23

서울특별시시장 이상배 ㉔

서울특별시규칙제2503호**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****개정규칙**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〈별표 2-10〉 근로자우등시절지방공무원 정원표 나. 부녀복지관의 직종별 중 5품란 앞에 4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5품의 정원란 중 "3"을 "2"로, 정원내용란 중 명칭의 "3"을 "2"로 한다.

4 품	1	명칭의 1
-----	---	-------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